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복지정책과)

제출일 : 2026. 8.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,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며, 관련 서식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생존 유공자의 배우자는 배제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, 제3조 제8호를 삭제함
- 나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존 배우자 복지수당(월 7만원) 조항을 삭제함
- 다. 복지수당 폐지에 따른 신청 서식(별지 제3호서식 삭제) 및 신청·지급 중지 관련 조문의 명목 및 자구를 정비함
- 라.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이 개정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함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,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생존 유공자의 배우자는 배제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, 기존 월 7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한편, 종전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음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